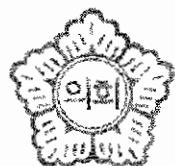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 
제212회 임시회(2017.05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 
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점 토 보 고 서



복지도시위원회  
전문위원 김용범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## 1. 안건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17년 04월 27일(木),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3. 위원회 회부일자

- 2017년 05월 2일(火)

## 4. 관련 법령

- 「공동주택관리법」

## 5. 제정 이유

기존 「주택법」에서 규율하던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2016. 8. 12. 「공동주택관리법령」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「주택법」에서 「공동주택관리법」으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 6. 주요 내용

- 가. 법령위임 근거 조문을 “「주택법」”에서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”으로 변경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13조)

## 7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위법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,
- 안 제1조 중 “「주택법」 제59조제6항” 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6항으로 개정함.
- 안 제2조제1항제1호는 “「주택법 시행령」 제82조” 을 “「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」” 제96조로 개정하고, 같은 항 제2호는 “「주택법」” 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”으로 개정함.
- 안 제4조제1항 중 “「주택법」 제59조제4항” 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93조제4항”으로 개정함.
- 안 제13조제1항 중 “「주택법」 제45조의4제2항” 을 “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7조제2항”으로 개정하고, 그 밖의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